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

※ 휴직, 소청/소송 회원 및 적립형, 분할급여대여 신청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 회원

성 명		생 년 월 일	년 월 일
회 원 번 호 [필수기재]		소 속 기 관	
기 간 [휴직, 소청/소송]	년 월 일 ~ 년 월 일		

2. 자동이체 신청 급여 내역 [□ 신규 □ 변경 □ 해지]

급 여 명	급여번호	금 액(원)	급 여 명	급여번호	금 액(원)
				/	

* 적립형 : 급여명, 급여번호, 금액 작성 / 휴직 또는 분할급여대여 신청 : 급여명만 작성

3. 자동이체 신청 및 동의 (반드시 본인 명의 예금계좌 기재)

금 융 기 관		계 좌 번 호	
이체개시연월 [휴직자에 한함]	년 월	장기저축급여 지정이체일	□ 17일 □ 25일
		대여, 적립형 지정이체일	□ 7일 □ 17일 □ 25일

※ 장기저축급여와 대여, 적립형의 지정 이체일을 반드시 구분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유 의 사 항	■ 자동이체는 휴직, 소청/소송 회원(대여), 분할급여대여, 목돈·퇴직생활급여 적립형 가입회원만 가능합니다. ■ 대여 월상환액은 25일 인출이 해당 월 마지막 이체인 관계로 미인출 시 해당 월 말일까지 개별 납부하셔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■ 자동이체 해지 시 개별 납부를 원하실 경우 본회로 문의 바랍니다.(회원콜센터 1577-3400) ■ 퇴직 후 급여금 미청구 시 자동이체가 유지되오니,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■ 퇴직일 이후에는 장기저축급여 부가금(이자)이 계상되지 않으며,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(소멸시효)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금이 소멸됩니다.	
첨 부 서 류	■ 공통	신분증 사본 1부
	■ 추가	휴직자 : 휴직발령통지서 또는 휴직확인서(나이스, EDI에서 휴직등록 시 제외)

위와 같이 부담금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서명 (인)

(서식 개정일자 : 2021. 04. 01.)

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